

세무평론

상해 국세국은 증치세 개혁에 따른 경외제공용역에 대한 증치세 면제실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반포함

개요

2013 년 10 월 29 일, 상해시국가세무국("상해국세국")은 2013 년 제 3 호 공고를 반포하였는데 이는 증치세 개혁에 따른 경외제공용역의 증치세면세관리방안(국가세무총국공고 2013 년 제 52 호, 이하 "52 호 공고", 관련 내용은 10 월 9 일에 발표한 딜로이트 세무평론을 참조)을 실행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외제공용역의 면세규정은 2012 년 1 월 1 일 상해 증치세 개혁 시범지구 창설 당시에 이미 명확히 소개된 바 있었으나, 적용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따른 실무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3 년 9 월에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제 52 호 공고)이 반포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금번 제 3 호 공고를 통하여 상해지구의 증치세 면세혜택의 등록절차 및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요건 충족에 따른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3 호 공고는 제 52 호 공고의 반포에 따른 지방성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3 호 공고도 제 52 호 공고와 같이 2013 년 8 월 1 일부터 유효하며 또한 납세자가 2013 년 8 월 1 일 이전에 제공한

규정에 부합되는 경외제공용역에 대하여도 제 3 호공고 규정에 따라 면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3 호공고 요건

면세혜택 적용조건

경외제공용역을 제공하는 상해지구 납세자는 제 3 호공고에 의하여 증치세 면제시 다음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1)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경외제공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시점은 반드시 2012 년 1 월 1 일 이후이어야 한다.
- 3) 납세자는 주관부서에 계약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경외제공용역은 반드시 경외기업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5) 경외제공용역수수료는 반드시 해외로부터 수령되어야 한다.

상기 1), 2)와 3)은 모든 경외제공용역 면제 항목에 적용되는 요건이며 일부 특정항목은 4)와 5)요구도 만족하여야 합니다(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증치세 면제항목목록 참조).

계약서 및 기타 서류 요구

제 3 호 공고는 경외제공용역 계약서의 격식이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의 관련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계약서(예를 들어 오더 혹은 확인서 등)를 사용하는 경우 쌍방이 용역목적, 당사자명칭 및 소재지, 용역발생지, 용역수수료 혹은 수수료계상표준, 지급일, 지급방식, 위약책임 등 필요한 계약정보를 약정했을 때 계약서로 간주한다.
- 용역수수료 등 정보가 부족한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납세자는 동 계약을 이행하는 오더 등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서로 간주한다.

또한 제 3 호 공고는 부동한 형식의 증치세 면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면제신청 시기에 관한 요구

제 3 호 공고는 주관세무기관에게 납세자의 경외제공용역에 관한 면제신청접수일부부터 14 근무일안에 등록승인절차를 마쳐야 하며 만약 면제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등기류감면세등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납세자가 향후 월별신고하고 되는 증치세 신고시 사용하게 됩니다.

소급적용

제 3 호 공고는 2013 년 10 월말에 반포되어 특히 납세자가 2012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0 월 31 일 기간 (이하 "소급기간")에 발생한 경외제공용역 증치세 면제신청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소급적용기간 중 경외제공용역을 제공하여 증치세 면제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2013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주관세무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절차를 보완하고 소급기간의 증치세 과세 및 환급액에 대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계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 자료, 과세공제항목의 세액 계산자료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증치세 개혁 과도기간에 재정지원정책을 적용 받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일시적으로 환급절차를 중지하였다가 기업이 재정지원자금의 금액을 계산하고 재정지원자금을 정리한 후 재정부의 증명자료에 근거하여 주관세무기관에 환급신청을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 구체적방법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안

제 3 호 공고는 상해지구 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동 문건의 반포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해 세무기관은 최근에 내부연수를 진행하여 실무처리방안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월의 증치세 면제수입을 반드시 당월 증치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월 증치세 신고시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14 근무일의 면제승인비준시간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자료준비 및 신고하기 위한 시간이 실무적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2013 년 11 월 분 증치세 신고기한인 2013 년 12 월 16 일까지

2013년 11월 분 증치세 면제수입을 신고하여야 한다면, 납세자가 2013년 11월 26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제등록승인통지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후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상해지구의 납세자는 경외제공용역 및 관련 증치세 처리에 관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면제신청을 고려 중인 납세자라면 제 3호 공고에 따라 면제신청제출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주관세무기관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경외제공용역 증치세 면제 항목	적용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경외 자원 및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 측량 및 탐사 용역 2. 컨퍼런스 및 전시 용역(관련 관리 용역을 포함)이 경외지역에서 제공된 컨퍼런스 및 전시 용역 3. 저장시설에 경외지역에 위치한 창고보관용역 4. 리스 물건이 중국 경외에 위치한 유형자산 또는 동산의 임대용역 5.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과 필름을 중국 경외에서 방송, 배급하는 용역 6. 국제운송사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수행되는 국제운송용역(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 7. 간이과세방법 적용 대상 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국제운송용역(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 b. 경외기업에 제공되는 연구개발 및 설계용역(중국내 부동산 관련 설계 용역은 제외) 8. 경외기업에 제공되는 아래 과세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술이전용역, 기술자문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경외제공용역보수를 취득한 시간은 반드시 201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3) 납세자는 주관부서에 계약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경외제공용역은 반드시 경외기업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 경외제공용역수수료는 반드시 해외로부터 수령되어야 한다.

<p>합동에너지관리용역(대상이 중국 내에 있는 경우 제외), 소프트웨어관련용역, 회로설계 및 시험용역, 정보시스템용역, 비즈니스프로세스 관리용역, 상표권·저작권의 양도, 지적재산권 관련 용역, 물류지원용역 (창고보관용역 제외), 감증자문서비스(중국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거나 용역 제공 시점에 대상 물건이 중국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의 제작, 원양기간용선/항해용선임대 및 항공기 포괄임대업</p> <p>b. 경외지역에서 제공되는 광고용역</p>	<p>상기 4)와 5)요구는 7(b). 8(a). 8(b)에만 적용됨.</p>
---	---

Indirect Tax Service Line Leader

Hong Kong

Sarah Chin

Partner

+852 2852 6440

sachin@deloitte.com.hk

Northern China

Beijing

Yi Zhou

Partner

+86 10 8520 7512

jchow@deloitte.com.cn

Eastern China

Shanghai

Li Qun Gao

Partner

+86 21 6141 1053

ligao@deloitte.com.cn

Southern China

Guangzhou

Janet Zhang

Partner

+86 20 2831 1212

jazhang@deloitte.com.cn
